

리에 치중하여야 겠으며, 이를 대비한 사업은 농산물이 농가 소득증대와 경쟁  
력에서 이길 수 있는 작목을 선정, 지원하여야 할 것임.

【 16 】 양주군발전특별위원회구성안

제의년월일 : 1994. 5. 26

제 의 자 : 의 장

주 문

양주군 발전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양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할 것을 결의함.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양주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 숙원 사업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주군  
의회 위원회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권선안, 우충국, 한상익,  
이은선, 김재현, 정명훈 위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함.

【 17 】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6. 8.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 주차료율 인상

○ 약영료 징수 신설

주요골자

○ 시설사용료 징수 범위를 주차료, 급수료 등에서 관광지내 공공시설물로 확대

(안 제2조)

- 시설사용료 중 약영료 징수 항목 신설 (기존업소의 천막도 성수기중 한시적 설치 허용 및 사용료 징수) (안 제3조)

- 주차료 인상 (1,000원 → 2,000원) (안 제3조)

###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양주군장흥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장흥국민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은 관광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관광지에 한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권을 판매 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2. 시설 사용권은 선납으로 한다.
3. 이미 납입한 시설사용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의 공무상 방문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군. 경의 작전등 일시 사용할 경우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요금표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대중이 잘 볼수 있는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①군수는 관광지내 시설사용료 징수 및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게 사용료의 징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할 경우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에 붙일 수 있다.

③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  
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을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요금 5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관광지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오손,  
파손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제한) 관광지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소란 및 고성방가자

2. 수목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3. 선량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기타 관광지 시설물 사용에 위해 행위자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사 용 료 요 금 표

○ 주차료

(단위 : 원)

구분 차종별	금 액	비 고
	1 일당 (익일 09:00 까지)	
소형차	2,000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2t 미만 화물차
중·대형차	3,000	13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2t 이상 화물차

※ 단, 1시간이내의 주차시에는 소형차 1,000원, 중·대형차 2,000원으로 조정 징수할

수 있다.

○ 약영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1 일당 (익일 09:00 까지)	
소형차 (5인 미만)	3,000	

증    형 (5-10인 미만)	4,000	
대    형 (10인 이상)	5,000	
업소용 천막	m <sup>2</sup> 당 월 500원	

## 【 18 】 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6. 8.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락지역에 대하여 양주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서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